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70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7가단22446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6. 6.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6. 16. 접수 제53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내지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99 항소심 계속 중]”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4행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아래 3)항 내용을 추가한다.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단296, 1469(병합)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에서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09. 3. 5.까지 조카 J이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회에 걸쳐 31,872,000원을 J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부터 2013. 5. 6.까지 합계 92,490,140원을 허위의 가공 직원인 J, K, M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 N로부터 전기안전관리 용역대금 616,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부터 2014. 2. 18.까지 총 76회에 걸쳐 325,309,600원을 송금 받아 N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D은 2021. 4. 8. 위 형사사건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99,

2020노1260(병합)]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8. 상고기각(대법원 2021도4974)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의 ”925,343,958원(= 334,742,908원 + 125,538,450원 + 465,062,600원)“ 부분을 ”752,542,648원(= 334,742,908원 + 92,490,140원 + 325,309,6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9억 원 이상의“를 ”7억 5,000만 원 이상의“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7행의 ”피고는 D을 상대로“를 ”원고는 D을 상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부동산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 제4 [] 층 []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지5 3688.7602㎡(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감시실, 창고)

지4 3932.5357㎡(소화가스실, 창고, 코아, 주차장)	15층 2130.8088㎡(오피스텔)
지3 3987.249㎡(창고, 중수도기계실, 코아, 주차장)	16층 1751.4096㎡(오피스텔)
지2 3967.77㎡(창고, 사무나보일러실, 코아, 주차장)	17층 1454.1588㎡(오피스텔)
	18층 1454.1588㎡(오피스텔)
지1 3923.1847㎡(분리수거실, 창고, 코아, 주차장)	19층 1421.7148㎡(오피스텔)
1층 740.2212㎡(코아, 복도, 공동시설, 방재실)	20층 1421.7148㎡(오피스텔)
2층 2197.364㎡(제1, 2층 근린생활시설)	21층 1008.3472㎡(오피스텔)
2층 1061.531㎡(코아, 복도, 공동시설)	22층 1008.3472㎡(오피스텔)
3층 964.694㎡(코아, 복도, 공동시설)	23층 1008.3472㎡(오피스텔)
3층 2294.199㎡(제1, 2층근린생활시설)	24층 1008.3472㎡(오피스텔)
4층 2168.8188㎡(오피스텔)	25층 830.3299㎡(오피스텔)
5층 2130.8088㎡(오피스텔)	26층 384.5175㎡(오피스텔)
6층 2130.8088㎡(오피스텔)	
7층 2130.8088㎡(오피스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8층 2130.8088㎡(오피스텔)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대 4984㎡
9층 2130.8088㎡(오피스텔)	
10층 2130.8088㎡(오피스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1층 2130.8088㎡(오피스텔)	제4 [] 층 [] 호 철근콘크리트조 112.3150㎡
12층 2130.8088㎡(오피스텔)	
13층 2130.8088㎡(오피스텔)	(대지권의 표시)
14층 2130.8088㎡(오피스텔)	1. 소유대지권 4984분의 16.4215 분,

